

【 15 】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10. 15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사유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

---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1면 지역경제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

##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

[ 1991. 3. 15 ]  
조례 제1370호

개정 1992.11.16 조례 제1435호

**제 1 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부과대상)**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 한다.

1. 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,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
2.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 또는 특정 열사용기자재·시공업자로서 법 제35조 (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
3.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

**제 3 조(부과기준)** ①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신고지연일수가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별표 금액의 50%까지 경감할 수 있고, 신고지연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 별표금액의 50%까지 가산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, 과실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위반시에 한하여 경고처분 할 수 있다.

**제 4 조(부과징수)** ①관계공무원(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직원)이 에너지사용자등의 위법사실을 조사,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청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인서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.

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 5 조(통지, 납부)**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

## 제11회 지역경제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

을 통지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로 부과 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의신청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 (1991. 3.15. 조례 제1370호)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1992.11.16. 조례 제143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